

#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

최근 전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지속 발생에 따라 농장 출입이 빈번한 사료 운반차량에 의한 가축 질병 전파·확산 차단을 위하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3. 7.

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근 거 :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
2. 목 적 :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유입 방지
3. 지 역 : 전국(종계 농장,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)
4. 대 상 :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(지대사료) 운반차량의 소유자 등
5. 기 간 : 2021. 03. 08. ~ 별도 조치 시 까지
6. 내 용

가. 지대(포대)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

\* 기 시행한 행정명령(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)에 따라 종계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 있었으나,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 진입 금지 조치

-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, 작업 전·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·소독 실시

나. 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7. 문 의 처 : 울산광역시 복구 농수산과(☎ 052-241-8082)